

## 인천○○학교 임차용역 입찰보증금 청구소송

<b>소송종류</b>	민사소송	<b>법 원 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15나 ○○○○○○	<b>사건유형</b>	입찰보증금
<b>원 고</b>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	<b>피 고</b>	◇◇◇◇
<b>판결선고일</b>	2016. 1. 15.	<b>비 고</b>	
<b>사건개요</b>	<p>- 2010년 2월 인천○○학교에서 2010학년도 인천○○학교 학생통학버스 임차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◇◇◇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, 2010년 3월 11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◇◇◇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함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7,267천원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함.</p>		
<b>주 문</b>	<p>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</p>		
<b>청구취지</b>	<p>- 피고는 원고에게 7,267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. 3. 11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p>		
<b>판결이유</b>	<p>- 기초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낙찰금액의 5% 상당액인 입찰보증금 7,267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3.11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.12.23.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</p> <p>-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하는 사유도 모두 이 사건 입찰공고에 배치되거나 피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.</p> <p>- 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.</p>		